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716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10. 2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9. 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1. 9. 3. 접수 제4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1, 2항 및 선택적으로,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21. 9. 3. 접수 제4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류지미

별지